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| no. | 펀드명 | 변경 사항 | 결산 | 변동성 |
|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
| 1 | 미래에셋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| 1), 4), 5) | ○ | ○ |
| 2 | 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| 1), 4), 5) | ○ | ○ |
| 3 |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| 1), 5), 6) | - | - |
| 4 |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| 1), 4), 5), 6) | - | - |
| 5 |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| 1), 4), 5), 6) | - | - |
| 6 | 미래에셋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| 1), 4), 5), 6), 7) | - | - |
| 7 |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| 1), 4), 5), 6) | - | - |
| 8 | 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1), 4), 5), 6) | - | - |
| 9 | 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| 1), 4), 5), 6) | - | - |
| 10 | 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1), 4), 5) | - | - |
| 11 | 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1), 4), 5) | - | - |
| 12 | 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1), 4), 5) | - | - |
| 13 | 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1), 4) | - | - |
| 14 | 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| 1), 5), 6) | - | - |
| 15 | 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 | 1), 4) | - | - |
| 16 | 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1), 4) | - | - |
| 17 |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1), 4), 5), 6) | - | - |
| 18 |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| 1), 4), 5) | - | - |

2. 변경 사항:

- 1) 모투자신탁 추가
- 2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6) 법 개정사항 반영
- 7) 가입자격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5월 19일 (목)

4. 변경 내용:

- 1) 모투자신탁 추가
 - 미래에셋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- 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|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<신설> |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| [모자형 구조] - <신설> | [모자형 구조] 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|
| 제 2 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| - <신설> | 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|
| 제 2 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 | 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<신설> | 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% 이상을 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. 또한,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 (보수차감전, 세전 수익률 기준) ※ 비교지수: HSCEI(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) |
| 제 2 부. [제 2 부 별첨 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- <신설> | - 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|

-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
-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-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-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-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-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-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-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-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-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|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<신설> |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| [모자형 구조] - <신설> | [모자형 구조] 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|
| 제 2 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| - <신설> | 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|
| 제 2 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 | 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<신설> | 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① 인도 주식에 60% 이상 투자합니다.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. ※ 비교지수: MSCI India Index |
| 제 2 부. [제 2 부 별첨 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- <신설> | -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|

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| 펀드명 | 변경 전 등급 | 변경 후 등급 | 변경 전(%) | 변경 후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미래에셋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| 2 | 2 | 21.42 | 23.53 |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|------|
| 미래에셋퇴직플랜차이나인덱스 4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 | 4 | 4 | 7.97 | 8.77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|------|

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 | 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| 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 |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| <신설> |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 |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| <신설> | 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 |
| 제53조(고난도 금융투자상품) | <신설> |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|

6) 법 개정사항 반영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2부. 8. 가. 투자대상 | 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| <삭제> |
| 제2부 8. 나. 투자제한 | 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<생략></u> | 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 |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|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 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 | 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</u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</u> | <삭제> |
| 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| 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 | 2. <생략> 나. <삭제> |
| 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|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|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|

| | | |
|--|---|---|
| | <p>②~③ <생략></p> <p><신설></p> | <p>②~③ <생략>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|
|--|---|---|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7) 가입자격 변경

| 펀드명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|---|---|
| 종류 C-I | <p>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,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p> | <p>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),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p> |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